

ACE사업단운영규정

2015.07.10. 제정

2017.03.01. 폐지

<ACE사업단>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동명대학교(이하 '우리대학교'라 한다.) 학부교육선도대학(ACE: Advancement of College Education)육성사업단(이하 '사업단'이라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과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교육부가 지원하는 학부교육선도대학육성사업의 추진과 사업비 관리·집행 등 사업단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.

제3조(기능) 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사업추진 총괄, 기획, 조정
2. 사업집행계획 수립 및 사업별 예산책정
3. 사업비 집행 기준 설정 및 적정성
4. 사업 추진실적 점검 및 보완 방안 제시
5. 성과지표 모니터링 및 성과 확산
6.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작성
7. 대학발전 계획과의 연계성 검토
8. 기타 사업단 운영에 관련된 전반사항

제4조(조직) ① 사업단에는 사업단장과 행정지원팀을 두며 사업단장은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사업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며 제반업무를 총괄한다.

③ 사업단장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.

1.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총괄
2. 사업실적 및 성과관리 총괄
3. 그 밖의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등

④ 사업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교원, 연구원, 직원 등을 둘 수 있으며, 각 부의 업무 분담과 행정지원을 위한 자체직원의 채용, 처우 및 업무분담에 관한 사항은 사업단이 별도로 정한다.

⑤ 행정지원팀은 사업단의 수업 수행을 위한 사업운영지원, 사업비 관리 및 집행, 세부사업 수행을 위한 지원 등 사업단 운영을 위한 행정을 지원한다.

제5조(사업추진위원회) ① 사업단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사업추진위원회를 둔다.

- ② 사업추진위원회는 외부 인사를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사업추진위원회 위원은 교무위원 중에서 사업추진과 관련된 교내 위원 및 교외 전문가를 총장이 임명하며 대학교육혁신본부장, ACE사업단장은 당연직으로 구성한다.
- ④ 사업추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단, 보직에 의한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과 같다.
- ⑤ 사업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1. 사업 정책 및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계획 변경 승인
 2. 사업성과 모니터링 및 자체평가
 3. 사업비 집행 가이드라인 제정, 사업비 배정 및 집행 점검
- ⑥ 사업추진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, 회의록은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서명이 있어야 효력이 인정된다.
- ⑦ 사업추진위원회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산하에 정책위원회 및 실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⑧ 사업추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2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⑨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6조(자체평가위원회) ① 사업 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를 둔다.

- ② 자체평가위원회는 외부 인사를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교무위원 및 사업추진과 관련된 교내·외의 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- ③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단, 보직에 의한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과 같다.
- ④ 자체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1. 자체평가 결과에 따른 부진사항 후속조치 계획수립 및 평가, 환류 체계 구축
 2. 핵심 성과지표 및 자율 성과지표의 정성, 정량 적정성 평가
 3.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, 시설, 전용공간 및 행·재정 지원의 적정성 평가
 4. 사업군별 세부사업에 대한 우수, 보통, 미흡 3단계 평가로 ACE 사업의 지속적인 성과 창출 주도
 5. 사업성과의 관리·활용·성과확산·지속방안 등 사후관리방안 계획수립
- ⑤ 자체평가위원회 회의는 매년 1월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위원 개인별 자체평가표에 의해 평가한다.

제7조(정책위원회) ① 사업단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고 실제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- ② 정책위원회는 대학교육혁신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한다.
- ③ 위원은 ACE사업단장, 교수학습지원센터장, 교양교육원장, ACE행정지원팀장, 학사지원팀장, 교수학습지원팀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1명의 간사로 구성한다.
- ④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1. ACE사업 연구과제 선정 및 심사

2. ACE사업 주요 정책사항 심의
3. ACE사업 방향 심의

제8조(실행위원회) ① 사업단의 세부사업 수행을 위하여 실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- ② 실행위원회는 대학교육혁신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한다.
- ③ 위원은 ACE사업을 전담하는 교원 및 직원으로 구성한다.
- ④ 실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.
 1. 사업계획서, 연차보고서 및 자체평가보고서 작성
 2. 프로그램 추진계획 및 예산계획 수립
 3. 프로그램간 연계 및 활성화 방안 수립
 4. 프로그램의 결과보고서 작성

제9조(사업단 재정) ①사업단의 재정은 국고지원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경우에 따라 운영비의 일부를 다른 회계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.

- ② 사업단 사업 업무수행에 이바지한 비전임 교원 및 계약직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으며, 그 재원은 국고지원금으로 한다.
- ③ 본 사업의 회계는 「대학 교육역량강화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훈령」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

제10조(기타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훈령과 관련 법령, 대학의 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 이전에 시행한 사업단의 업무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.